

## 북한인권 실태: 주요 특징 및 변화

김 수 암 (북한인권연구센터 소장)

이 규 창 (북한인권연구센터 연구위원)

Online Series CO 12-22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는 『북한인권백서 2012』를 발간하게 되었다. 이번 국문판 발간에 즈음하여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중심으로 주요 특징에 대하여 소개하는 글을 게재하게 되었다. 통일연구원에서는 북한주민의 인권실태에 대해 2가지 기준으로 평가하여 오고 있다. 첫째, 북한이 유엔 회원국이고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등 4개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한 당사자라는 점에서 세계인권선언과 4개 국제인권조약에 규정된 권리를 바탕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둘째, 북한도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내법률을 제·개정하여 오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당국이 자신이 제정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는 지를 실태 분석의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특정국가의 인권실태는 해당 국가에 직접 접근하여 조사를 통해 기술해야 한다. 그렇지만 북한당국은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통일연구원은 국내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심층면접 조사를 통해 북한인권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이번 『북한인권백서 2012』는 2011년 국내입국 전체 북한이탈주민 중 기초설문(1983명)을 바탕으로 유의미한 인구학적 특징 및 사회적 배경(다양한 지역별 거주자, 남한직행 입국자, 구금시설 유경험자 등)을 고려하여 230명을 선정하여 심층 면접한 결과를 반영하였다. 심층면접은 북한인권백서의 주요 내용을 구성하는 권리를 중심으로 전문 조사지를 작성하여 2시간 정도 조사가 이루어졌다.

## I. 시민적·정치적 권리 실태

### 1. 공개처형

체제저항행위, 살인·강간·인신매매 등의 사회일탈행위, 외부 정보 유통행위, 마약 밀수·밀매행위 등에 대한 공개처형이 지속되었다. 그런 가운데 공개처형 대상 범죄행위에 있어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변화를 보였다. 첫째, 사회통제 및 북한 주민들에 대한 단속과정에서 적발된 북한 주민이 인민보안부 소속의 보안원과 국가안전보위부 소속의 지도원을 살해하였다는 죄목으로 공개처형되었다는 증언들이 있었다. 이는 후계체제 구축과정에서 사회통제강화에 불만을 품은 북한 주민들이 단속 주체인 보안원과 국가안전보위부 지도원을 살인하고, 북한 당국은 이를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하여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둘째, 수도 평양에 전기를 보내지 않은 행위와 국가재산을 탕진한 행위에 대해서 일부 공개처형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북한 당국이 이 행위들을 강성대국 내지는 강성국가 건설에 반하는 반국가행위로 간주하여 중한 처벌을 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2000년 이후 감소하였던 소, 염소 등의 가축 밀수 및 밀매행위에 대한 공개처형과 인육을 먹었다는 이유로 공개처형되는 사례가 화폐개혁 이후 다시 등장하고 있다. 이는 화폐개혁 실패로 인한 경제난과 식량난의 심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공개처형 횟수는 대폭 감소하였다. 2011년 전체 면접 대상자 230명 가운데 2011년에 공개처형을 목격하였거나 들었다고 증언한 북한이탈주민은 2명에 불과하였다. 2011년 북한의 공개처형이 감소한 이유는 몇 가지로 분석된다. 첫째, 북한 당국이 공개처형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의식하여 공개처형보다는 비밀처형을 실시하거나 무기노동교화형을 부과하는 사례가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인권의 보편성에 입각하여 우리나라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북한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해준다. 둘째, 공개처형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공포심을 심어 북한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북한 당국의 의도와 달리 공개처형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셋째, 북한의 전반적인 부패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 사회에 뇌물수수가 만연하고 있다. 공개처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도 뇌물수수로 처벌을 면하거나 가벼운 형벌을 받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탈북자들의 지역이 지리적으로 편중되어 있고 또한 지난 해 공개처형을 직접 목격하였거나 전해들은 북한 주민의 탈북이 금년에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로서 2011년 북한에서의 공개처형이 줄었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한편, 김정일이 사망한 상황에서 명실상부한 북한의 최고권력자가 된 김정은이 자신의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공포정치의 일환으로 공개처형을 확대할지, 아니면 국제사회의 비판을 의식하여 공개처형 대신 비밀처형이나 노동교화형으로 전환하는 태도를 지속할 지의 여부가 주목된다.

공개처형을 하는 경우에도 북한 형법과 형법부칙(일반범죄)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를 대상으로 사형 판결을 하고 사형이 확정되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사형이 집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문건들이 공개

되었다. 구체적인 사례로 평양시 재판소는 리성철을 형법부칙(일반범죄) 제4조의 국가재산 고의적 파손죄를 적용하여 사형을 판결하였다. 2010년 9월 최고재판소는 평양시 재판소가 사형 판결하여 확정된 피소자 리성철의 공개사형 집행을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평안북도 재판소는 형법부칙(일반범죄) 제4조를 적용하여 김춘남에게 사형을 판결하였다. 최고재판소는 평안북도 재판소가 사형 판결하여 확정된 피소자 김춘남에 대한 공개사형 집행의 승인을 요청하였다. 이 문건들은 북한이 공개처형을 함에 있어서 형사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최초의 사례들로서 그 의의를 과소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모든 공개처형이 위의 문건에 나타나 있는 절차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 2.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집결소, 구류장, 교화소, 노동단련대 등 각종 구금 및 교정시설에서 강제노동과 고문, 구타 등의 가혹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가혹행위는 구금 및 교정시설의 지도원이 직접 가하기도 하지만 지도원의 지시에 따라 구금시설 반장이나 동료수감자들이 가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지도원이 직접 가혹행위를 가할 경우 제기될 수 있는 외부의 비판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각종 구금 및 교정시설에서의 영양 및 의료상황도 심각하다. 수감자의 상태가 심각한 경우 노동을 시키지 않는 등 최소한의 배려는 하지만 약품 제공과 치료는 하지 않고 있다. 강제노동과 가혹행위로 인한 부상과 질병의 발생도 지속되고 있으며, 질병과 부상, 영양실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지속되고 있다. 북한 주민의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침해는 집결소의 경우에는 청진 집결소, 교화소의 경우에는 전거리 교화소, 구류장의 경우에는 온성군 국가안전보위부가 운영하는 구류장에서의 사례가 집중적으로 증명되었다. 노동단련대의 경우에는 북한의 주민통제 및 단속 강화에 따라 북한 전 지역에서 침해 사례가 증명되었는데, 함경남북도와 양강도, 자강도의 사례가 평안남북도와 황해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증명되었다.

북한 내에는 6개 정치범수용소에서 15만~20만 명의 정치범과 그 가족들이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다. 남한행 기도와 남한사람 접촉 등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여 정치범수용소에 수용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가족이 탈북한 경우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을 수용하는 사례, 예배 등의 종교 활동을 이유로 수용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한편, 정치범수용소는 정치범들이 수용되지만 사회일탈행위에 대한 처벌로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는 사례도 있다. 대표적으로 인신매매를 이유로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는 사례가 꾸준히 증명되고 있다. 또한 사안이 중대한 일부 경제사범의 경우에도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은 2010년 2월경 강원도 천내군에 있는 연유창고의 기름을 연유공급소 소장과 비서가 절도하고 사용 및 판매를 하여 2010년 2월경 그 가족들까지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명하였다. 강원도 천내군에 있는 연유창고는 김일성, 김정일이 비축했던 비밀 창고라고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증언과 수기 발간으로 정치범수용소의 실태가 추가적으로 드러났다. 정치범이 수용소에 들어가면 공민증을 압류당하고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의 기본권을 박탈당하는 것은 물론, 정상적

인 배급이나 의료혜택 등도 중지되며 결혼 및 출산도 금지된다. 그러나 한 때는 입당이나 결혼, 출산도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북창 정치범수용소(18호 관리소)에 무려 27년간 수용되었다가 탈북한 김혜숙은 18호 관리소 수용시 모범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원이 되어 1984년 10월 입당하였고, 탄광 발파공과 결혼하여 출산하였다. 회령 22호 관리소의 실태도 추가로 증언되었다. 부모와 자식일지라도 각자 일은 각자가 완수해야 하며, 부부관계를 못하게 하기 위해 밤과 낮에 번갈아가며 일을 시킨다고 한다. 또한 22호 관리소에 수로가 있었는데 이는 유사시 수용자를 사살할 경우 총알이 아깝다는 이유로 수로에 익사시킬 목적이었다고 한다.

### 3. 정당한 법과 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

북한의 형사재판절차가 형법, 형사소송법, 재판소구성법 등 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사시간이나 예심 또는 재판기간이 준수되고 있는 사례도 증언되고 있다. 그러나 적법 절차 위반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북한의 형사법제상 판사와 인민참심원이 제1심 재판에 참여해야 하지만 재판 전 단계인 수사단계나 예심단계에서 판사와 인민참심원이 배제된 채 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서류상으로 재판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수사시간이나 예심기간 또는 재판기간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도 많다.

북한은 균등을 각성시키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서 현지공개재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현지공개재판은 많은 경우 공개처형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지공개재판이 모두 공개처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공개재판이 이루어지는 지역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곳은 양강도 혜산시, 함경북도 무산군과 회령시로 조사되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다수가 이 지역 출신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공개재판 사유는 인신매매, 살인, 성매매 등의 사회일탈에 따른 공개재판이 다수를 차지하며, 경제사범과 도강에 따른 공개재판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공개재판의 결과로는 유기노동교화형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공개재판의 결과를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북한이탈주민들이 공개재판의 결과를 모른다고 답한 이유는 북한 주민들이 공개재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마지 못해 동원된 결과로 판단된다. 북한 주민이 공개재판 이전에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아 형이 결정되고 공개재판에서는 단지 판결문을 낭독한 후 형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공개재판 이후 형이 결정되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동지심판은 주로 형이 확정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되지만 동지심판 이후 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되었다는 증언들도 제기되었다. 최근 동지심판은 주로 군대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식량난으로 인한 탈영과 불법월경 등의 사유로 동지심판이 실시되고 있다. 이는 북한의 경제난 및 식량난이 북한 군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상소기간은 형식상 준수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상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상소를 하는 경우 추가형량이 가해지거나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이다. 신소도 마찬가지로 제도적으로는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 신소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변호권도 북한 헌법과 변호사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지만 절

반이 넘는 북한 주민들은 변호 받을 권리를 모르고 있다. 또한 변호사의 역할도 피의자 또는 피고인 변호보다는 당 정책을 설명하거나 피의자의 죄행을 폭로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 실제 재판에서도 피고인을 위해 변호하는 사례도 있지만 변론을 아예 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죄행을 폭로하는 사례가 일반적이다.

#### 4. 사회통제 강화와 부패의 만연

후계체제 구축 및 경제난에 따른 비사회주의현상이 확산되면서 주민통제와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 주민들이 처벌을 면하기 위해 뇌물을 주는 행태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핸드폰 사용이나 녹화물 유통을 하다가 단속되어도 뇌물을 주고 처벌을 면하거나 가벼운 처벌을 받는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교화소, 집결소, 구류장, 노동단련대 등의 구금 및 교정시설에서 뇌물을 주고 풀려나거나 감형을 받는 사례들이 증언되었다. 수사 및 예심 과정에서 뇌물을 바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증언되고 있다. 또한 재판과정에서 뇌물수수를 통한 경한 형벌의 부과나 형기 단축 등이 빈번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사회적 교양이나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는 증언도 있었다.

이혼문제의 경우에도 부패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북한에서는 남편의 폭력, 먹고 살기 위한 여성의 장사 활동 증가, 부부불화 등으로 이혼이 증가하고 있다. 이혼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수십만 원의 뇌물을 받쳐야 하며 그래도 여성의 입장에서 이혼 재판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는 증언이 늘고 있다.

#### 5. 경제력 증시에 따른 성분에 의한 차별 완화

북한 헌법은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출신성분에 따른 차별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중앙당이나 국가안전보위부, 호위총국 등을 제외하면 성분(토대)보다는 경제력이 증시되는 사회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중후반 이후부터는 입당과 간부등용에 있어서조차도 뇌물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노동교화형을 받고 교화소에 다녀온 사람도 뇌물을 바치면 입당할 수 있다는 증언도 있다. 북한의 대표적인 대학인 김일성종합대학에 입학하는 경우에도 뇌물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뇌물수수로 토대까지 바꿀 수 있다는 증언들이 제기되었다. 이는 북한의 전반적인 경제난과 맞물려 뇌물수수가 북한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대변해 준다.

그러나 남한으로의 탈출을 기도한 사람이나 정치범수용소 수용 전력이 있는 사람은 입당이 불가능하다. 월남자 가족들, 중국에 친척이 있거나 연고자가 있는 경우 또는 부모가 중국 사람인 경우도 입당과 군 입대, 간부등용, 대학진학, 결혼 등에 있어 차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입당의 이점이 없어 돈을 써가며 굳이 입당을 하지 않는다는 증언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북한 사회를 떠받치는 당 조직까지 성분보다는 경제력을 중시하는 사회풍조가 침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II.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

아래에서는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 중 식량권과 건강권에 대해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주요 내용 및 특징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 1. 식량권(right to food)

2011년에도 식량의 절대부족으로 인해 일반주민들의 식량권은 여전히 위협을 받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당국에 의한 차별 배분정책과 선군정치에 따른 왜곡된 예산배분으로 인해 북한주민의 식량권이 위협받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중앙배급체계는 공식적으로 폐기되지 않은 가운데 차별적 배분정책으로 인해 일반주민들의 식량에 대한 접근권은 차별당하고 있다.

첫째, 핵심 계층은 여전히 중앙배급체계를 통해 국가에 의해 식량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둘째, 주요 기관 · 기업소에서 식량 자력 조달제를 강화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도시 근로자의 경우 기업소의 성격에 따라 배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셋째, 농촌지역은 식량사정이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지만 최근 농민들의 식량사정도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넷째, 배급체계가 기형적으로 작동되어 배급체계에서 소외된 가정의 경우 노인, 아동 등 취약계층의 식량권이 크게 위협 받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다섯째, 북한은 선군정치를 내세워 군부를 활용한 체제유지를 도모하면서 군에 우선적으로 식량을 배급하고 있다. 그런데 군인 내부에서도 식량에 대한 접근은 크게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식량권의 차이는 군 복무 지역에 따라 다르게 할당되면서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계층별 · 직종별 식량에 대한 접근의 차이와 더불어 지역 따른 차별의 특징도 나타나고 있다.

식량의 절대적 부족과 차별적 배분정책에 따라 일반주민들의 경우 식량의 일부나 전부를 시장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구매력에 따른 식량에 대한 접근의 차별이 일반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 그리고 구매력의 차이로 인해 식량에 대한 접근 차별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2009년 11월말 전격 실시된 화폐개혁이 북한주민의 식량권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런데 화폐개혁 이후 일반주민들이 적응하면서 식량에 대한 최악의 접근 상황은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식량구입 방식과 구매력에 따른 식량에 대한 접근의 양극화는 2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식량의 절대 양에 대한 접근의 차별과 더불어 식량의 질(종류)과 부식에 대한 접근의 양극화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 현상 속에서 장마당에서의 구매능력이 없는 주민은 생존의 위협까지 받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일반주민들의 영양상태는 호전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1년 면접대상자를 대상으로 북한 내 영양상태를 5단 척도로 조사하였다. 응답자 중 2010년 이후 탈북한 탈북자는 110명이었는데, 이를 통해 2010년 이후 영양상태를 살펴보면 영양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응답이

83%(악화 37%, 매우 악화 46%)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식량을 구입할 능력이 없는 최하류층의 경우 극단적으로 현혈을 통해 식량을 조달하려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 2. 건강권(right to health)

북한은 사회주의헌법, 인민보건법 등에서 보듯이 형식적으로 무상치료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러한 무상치료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무너져 있다. 2011년에도 북한에서 전반적 무상 의료제의 붕괴는 계층별로 건강권에 불균등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일반주민과 간부들이 주로 이용하는 병원의료체계의 상대적 붕괴정도가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의료체계의 상대적 붕괴 수준과 접근기회의 차이는 북한 내 계층별 의료 혜택 수혜 불균형의 핵심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일차적인 통합 예방 및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북한 보건 시스템의 핵심인 의사담당구역제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2011년 심층면접자를 대상으로 호담당의사제의 유용성에 대한 조사에서 응답자는 86명이었는데, 유용하지 않다는 응답(유용하지 않음 24%, 매우 유용하지 않음 50%)이 74%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 내의 의료체계 붕괴와 의약품의 절대 부족 상황은 계층별로 건강권에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의약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의약품에 대한 접근은 계층별로 불균등하게 나타나고 있다. 병원에 지급되는 의약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특권 계층과 간부들은 제한적으로 병원에 공급되는 의약품의 혜택을 보고 있다. 연줄과 권력에 의해 제한된 의약품이 제공됨으로써 건강권에 차등적 접근이 심각해지고 있다. 둘째, 개인적으로 약을 구입하는 현상이 일반화되면서 구매력에 따라 효능에 차이가 있는 약품을 구입해야 하므로 이것이 건강권에 불균등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일반주민들이 장마당에서 싸게 구입하는 의약품에는 가짜가 많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의 건강권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의약품을 팔고 있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데 북한주민들 사이에 약은 전문적인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게서 사서 먹어야 한다는 의식조차 형성되어 있지 않다. 셋째, 약의 오남용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경제난에 따른 치료를 위한 마약 복용은 건강을 해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2011년에도 인민보건법 제10조(무료의료봉사)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상치료 항목이 사실상 실행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첫째, 입원하는 비용은 들지 않지만 병실에서 필요한 대부분은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치료와 입원할 경우 치료를 잘 받기 위해 의료진에게 현금이나 현물을 제공해야 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셋째, 북한에서 가정의 경제력에 따른 의료혜택의 불균형이 가장 심한 것은 수술과 같은 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큰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으려면 우선 친척 등 연줄을 통해 수술을 주선 받아야 한다. 그런데 돈이 없으면 그냥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넷째, 진료를 받는 순서도 뇌

물 여부에 따라 불평등하게 적용된다고 한다. 돈의 제공 유무에 따라 진료 순서도 영향을 받게 된다. 경제난으로 의사들도 배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서 다양한 형태로 생존을 모색하고 있다. 첫째, 진료 과정에서 환자들로부터 현금이나 현물을 요구하여 받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둘째, 의사들이 불법적으로 가정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사들이 낙태를 해주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셋째, 의사들이 부족한 의약품마저 병원에서 빼들리면서 하층 북한주민의 건강권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Ⅲ. 김정은 체제의 북한인권 전망

2010년 9월 제3차 당대표자회, 2012년 4월 11일 제4차 당대표자회와 4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5차 회의를 통해 김정은 체제의 권력엘리트의 면면이 드러났다. 특히 4차 당대표자회에서 전체적으로 공안계통의 인물이 전면으로 포진하고 있다. 국방위원회의 경우에도 군수계통과 공안계통이 두 축을 이루고 있다.<sup>1)</sup> 김정을을 뒷받침하는 권력엘리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단기적으로 공안기관을 통해 김정은 체제의 안정을 위한 사회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북한주민의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생존을 위한 주민들의 시장활동과 당국의 통제 사이에 갈등 요소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2가지 차원에서 북한주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첫째, 통제강화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의 불만이 표출되면서 인권실태가 악화될 것이다. 둘째, 통제가 강화되더라도 남한 비디오 시청 등 외부정보와 결합되면서 점차적으로 북한주민의 인식의 변화가 확산될 것이다.

다음으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도 본질적으로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원회에 군수계통의 인물이 포진되고 4월 6일 김정은 노작, 4·15열병식 김정은 연설에서 유훈통치, 특히 선군정치를 지속할 것이라는 점에서 국방공업 우선이라는 예산의 왜곡된 배분은 시정되지 않을 것이다. 김정은은 4월 권력승계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인민적 시책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 4·15 열병식에서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한다”고 역설하였다. 그리고 4·6노작에서 국방공업을 제1로 배열하기는 하였지만 인민생활 향상을 다음으로 배열하고 있다. 특히 이전과 달리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전력, 석탄, 금속, 철도운수부문의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식량문제, 주거와 식수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김정은도 통제 일변도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인민생활의 향상을 강조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인민생활에 대한 강조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예산과 선군정치를 지속하는 한 본질적으로 이러한 시책의 효과가 주민들의 사회적 신장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차별적 배분정책이 시정되지 않는 한 일반주민과 취약계층의 식량과 의료에 대한 차별적 접근은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다. 전반적 식량과 의료체계의 복원과 더불어 차별정책과 부패요소를 제거해야 일반주민들의 실질적 인권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1) 박형중, “김정은 통치연합의 출범과 특징,” 통일연구원 온라인시리즈 2012-18, 2012년 4월 23일.